

용해로, 이런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용해로 설치·변경 전, 제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 검토 제도



제출 대상 여부
정확한 판단이 중요!

01. 용해로 대상 기준



1회 최대 용해용량이

3톤 이상

인 경우 제출 대상 검토



회분식 용해로(도가니로 등)

• 1회 최대 용해용량을 기준



연속식 용해로

• 시간당 용해용량과
• 최초 장입 시 최대용량 중
큰 값을 기준

02. 많은 사업장이 헛갈리는 부분!



1톤 용해로 3대
= 자동으로 대상 아님



1톤



1톤



1톤



개별 용해로의 용량으로 판단

각 용해로가 3톤 미만이라면
용해로 대상 설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다른 변경(주요 구조부분 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용해로 주요 구조부분 변경 기준

용해로는 일반 설비처럼 100kW 증가 기준이 아니라,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식



가스식



유도식



유도식



중유식



열원의 종류가 변경된다면 주요 구조부분 변경으로 보아
변경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예시

- 전기식 → 가스식
- 가스식 → 유도식
- 유도식 → 중유식 등



TIP

- 용량이 3톤 이상인지 확인
- 열원의 종류 변경 여부 확인
-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해당하는지 검토
- 변경 시 변경신고 대상 여부 검토 후 진행



CHECK

CHECK

설비 설치, 이전, 변경을 계획 중이라면
공사·발주 전에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불이익(과태료 등)을 예방하세요!

